준법감시인 심의필: 2025-3005(2025.06.01.~2027.05.31.)



퇴직연금 정기예금 요약상품설명서

기본정보

가입디	l상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						
가입금	ŀ액	1원 이상						
계약기	간	3개월, 6개월, 1년, 18개월, 2년, 30개월, 3년, 5년(디폴트옵션형은 3년)						
이자지	급시기	만기일시 7	만기일시 지급식 :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지급					
지급저	한	계좌에 질권설정 및 법적지급제한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						
해지 시 불이익		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금리 적용 등						
적용금리		예금일(신규일)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금리 적용						
만기처리방법		(DB)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 재예치 (DC/IRP)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☞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상품과 함께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,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재예치 됨						
분할하	지	만기해지 :	포함하여 3회 이내어	서 분할 해지 가능				
제한시	항	통장발급,	담보제공, 질권설정	및 양수도,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				
예금자 보호	DC/IRP	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5천만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	
13	DB	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						
위법계약해지권		 ■ 금융회사가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,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 가능 ■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 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						
				에서 기능(세약 중요 시 영사 물기)				
			경과기간	에서 가능(세약 공표 시 영사 물가) 적용금리/적용률				
		DB · DC · IRP	3개월미만 6개월미만 9개월미만 11개월미만 11개월이상 ■ 중도해지 기준금리 ※ 농협인터넷뱅킹>금	지용금리/적용률 0.10% 중도해지 기준금리 × 5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 중도해지 기준금리 × 6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 중도해지 기준금리 × 7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 중도해지 기준금리 × 8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 중도해지 기준금리 × 8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 당하지 기준금리 × 8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 당하지 기준금리 × 8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				
		DC .	3개월미만 6개월미만 9개월미만 11개월미만 11개월이상 ■ 중도해지 기준금리 ※ 농협인터넷뱅킹>급	지용금리/적용률				
0	E해지 자율 , 세전)	DC .	3개월미만 6개월미만 9개월미만 11개월미만 11개월이상 ■ 중도해지 기준금리 ※ 농협인터넷뱅킹>급 ■ 경과월수는 계약월 경과기간 32개월 미만 32개월 이상 ■ 약정금리 : 예금가입일 ■ 경과월수, 계약월수	지용금리/적용률				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상담센터(1661-3000, 1522-3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banking.nonghyup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상품개발부서: 퇴직연금부)

적용금리^{주)}

3개월 만기 금리

6개월 만기 금리

경과기간별 금리

1년 만기 금리

경과기간

3개월 미만

3개월 ~ 6개월 미만

6개월 ~ 1년 미만

1년 이상

 $^{\widehat{\gamma}}$ 예금일(신규일)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해당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

준법감시인 심의필 : 2025-3005(2025.06.01.~2027.05.31.)



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이 설명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, 거치식 예금약관,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이 적용 됩니다.
-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 품 명 : 퇴직연금 정기예금

■ 상품특징: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

위한 정기예금

2 거래 조건

□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약관 및 수령하시는 증서에 따릅니다. (작성기준일 : 2024.05.01.)

구 분	내 용								
가 입 대 상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								
가 입 금 액	1원 이상 최고금액 제한없음								
계 약 기 간	3개월, 6개월, 1년, 18개월, 2년, 30개월, 3년, 5년 (디폴트옵션형은 3년)								
이자지급시기	만기일시 지급식 :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지급								
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	■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변동 불가								
해지 시 불이익	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 적용 등								
만기앞당김해지	만기일이 금융휴무일, 일요일, 법정공휴일인 경우 만기앞당김 해지 가능 ※ 단, 앞당김 일수만큼 이자계산 기간에서 차감하여 약정금리를 적용								
	예금일(신규일)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(https://banking.nonghyup.com)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금리 적용 (2025.05.01.현재 고시금리, 연%,세전)								
적용	유 형	3개월	6개월	1년	18개월	2년	30개월	3년	5년
이자율	확정급여형	2.10	2.20	2.50	2.05	1.93	1.83	1.80	1.80
(연%, 세전)	확정기여형,개인형	2.00	2.10	2.40	1.95	1.83	1.73	1.70	1.70
	(디폴트옵션) 확정기여형,개인형	_	-	-	-	_	-	1.80	-
	■ 상기 이율은 작성	성일 현재	금리로	실제 적	용금리는	가입일의	의 고시금	리에 따	름

2 거래 조건	l		onther./banking.	
	DB	경과기간	적용금리/적용률	5*13.7846#
		3개월미만 6개월미만	0.10% 중도해지 기준금리 × 50% × 경과월수 : 계약월수	
	•	9개월미만	중도해지 기준금리 × 6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	
	DC	11개월미만	중도해지 기준금리 × 7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	
	•	11개월이상	중도해지 기준금리 × 80% × 경과월수 ÷ 계약월수	
중도해지 이자율 (연%,세전)	IRP	※ 농협인터넷빙	준금리 : 예금가입일 당시 고시된 기본이자율 성킹>금융상품몰>농협은행>공시실>예금>예금금리>거치식>정기예금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, 월 미만 일수는 버림	3
		경과기간	적용금리	
	디 <u>폴</u> 트 <mark>옵</mark> 션형	32개월 미만	약정금리 x 80%	
		32개월 이상	약정금리 x 90%	
	('25년 6월 가입 부터 적용)	■ 경과월수, 계	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(디폴트옵션형) 금리 적 약월수 미적용 6월) 이후 신규계좌부터 적용	용

예금일(신규일)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아래 이윸 적용 ※ 단, 퇴직연금 수수료 지급,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및 승인 취소 등 사유인 경우에는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금리 적용

특별중도해지 이자율 (연%,세전)

특별중도해지

사유

경과기간	적용금리 ^{주)}
3개월미만	3개월 만기 금리
3개월 ~ 6개월미만	6개월 만기 금리
6개월 ~ 1년미만	1년 만기 금리
1년 이상	경과기간별 금리

- 주) 예금일(신규일)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해당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
- 1.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(급여이전 포함)
- 2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8조2항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
- 3. 퇴직연금의 특별중도해지 사유
 - 1)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 시
 - 2)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파산 또는 폐업
 - 3)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 - 4) 수탁자의 사임
- 4.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계약이전
- 5.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제도전환
- 6. 가입자 사망
- 7. 연금지급
- 8.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질병,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(단, 개인형IRP에 한함)
- 9. 가입자의 해외이주(개인형 IRP에 한함)
- 10.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·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이 상품에서 인출하는 경우
- 11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(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) 및 13조의6(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)의 사유로 인한 상품교체인 경우

2

만기처리방법	1.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(DB)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■ 재예치 제외 :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제3호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■ 재예치 금리 : 재예치일 현재 고시된 금리 적용 ■ 재예치 금액 :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 금액 2.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),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■ 만기상환 제외 : 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상품과 함께 이예금이 편입된 경우,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재예치 됨			
분할해지	 만기해지 포함 3회 이내 가능 (단,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 가능) 인출횟수 산정 제외 사유 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(DB)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경우 ■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을 위한 경우 ■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			
계약해지방법	퇴직연금시스템을 통해 생성 및 전달된 전문에 의해 수탁자가 해지거래를 요청함으로써 시스템으로 일괄 해지 처리			
제한사항	통장발급, 담보제공, 질권설정 및 양수도 불가			
세제혜택	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			
예금자보호 여부	DC/IRP	해당 예금보업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명 최고 5천만원	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5천만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합산) 보호됩니다.	
	DB	비해당 _{예금보영공} 바보호	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	

2 거래 조건

위법계약해지권

-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^{주)} 시 **일정 기간 이내**에 금융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 - 주)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위반(제17조~21조):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, 불공정영업행위, 부당권유행위

3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9조제1항,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-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상담센터(1661-3000, 1522-3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banking.nonghyup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. (상품개발부서 : 퇴직연금부)



〈별지1〉 예금성 상품 관련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

구 분	내용				
자료열람 요구권	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수 있습니다.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 				
위법계약 해지권	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				
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	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상담센터 (1661-3000, 1522-3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banking.nonghyup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				
예금자보호	(DC/IRP)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5천만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				
여부	(DB) 예금보험공사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				